

「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3. . 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의 관람료 통일성을 위해 일부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12조제7항을 “⑦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 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 제11조의2를 준용한다.”로 수정함.

「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의 관람료 통일성을 위해 일부를 수정한다.

제12조제7항을 “⑦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 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 제11조의2를 준용한다.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조(관람료) ① ~ ⑥ (생략) ⑦ 제19조에 따른 회원과 3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복 지회관 이용에 대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.	제12조(관람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----- 20명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2조(관람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관람료 할인에 관</u> <u>하여는 「구미시문</u> <u>화예술회관 운영</u> <u>조례」 제11조의2를</u> <u>준용한다.</u>